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

1.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시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(안 제4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임에도 창업 기획자에서의 경력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시의 경력 인정 범위에 미포함

* 현행 전문개인투자자 경력 인정 회사의 범위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 금융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,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(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경력요건 중 투자심사 경력(2년 이상), 투자관련업무 경력(3년 이상)이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인전문투자자 경력 요건의 형평성 제고 및 개인투자조합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2. ‘초기창업자’ 명칭을 ‘초기창업기업’으로 변경(안 제13조제4항, 제14조, 제15조제2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(법률 제18861호, '21.12.28., 전부개정)에 따라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‘초기창업자’ 명칭이 ‘초기창업기업’으로 일괄 변경되었으나, 하위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은 미반영

※ 근거법령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(정의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‘초기창업자’ 명칭을 ‘초기창업기업’으로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입법 미비사항 정비로 법령수요자의 이해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3. 창업기획자가 결성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의 범위 명확화(안 제13조제5항, 제15조제2항, 제20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9395호, '23. 4. 18., 일부 개정)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범위가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에 더해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조합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)으로 확대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- 창업기획자는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*가 아니므로, 창업기획자가 결성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의 범위를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할 필요

*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(단독)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등, 일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창업기획자가 결성가능한 벤처투자조합의 범위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제외됨을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창업기획자가 결성가능한 벤처투자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주체

구분	벤처투자조합	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
근거조항	법 제50조제1항	법 제63조의2제1항
결성주체	- 창업기획자 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- 한국벤처투자 -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-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(책임)회사 -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- 그 밖에 중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	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-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- 일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투자 의무비율 산정기준 구체화(안 제24조제2항, 제35조제5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(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)의 투자 의무비율 산정시 M&A펀드,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 펀드의 출자금액은 제외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펀드이므로, 투자 의무비율 산정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제외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제외
-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창업·벤처기업 투자비율 산정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제외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목적 투자에 부합하는 투자 의무 부여 및 분산 투자의 자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5. 유한(책임)회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 확대(안 제33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창업기획자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개인투자조합 결성·운용, 창업·벤처기업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임에도 유한(책임)회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에 미포함

* 유한(책임)회사 전문인력 요건 : ❶투자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과 3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또는 ❷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

* 현행 경력 인정 회사의 범위 : 유한(책임)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 금융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(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(책임)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중 투자관련업무 경력이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창업기획자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유한(책임)회사 경력인정 요건의 형평성 제고 및 벤처투자조합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6.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산정방식 정비(안 제34조제1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원활한 출자자 확보 및 자금 유입을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유한책임조합원 산정 기준* 적용 필요

*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시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산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시 출자비율에 관계 없이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1인으로 산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 자금 유입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 촉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7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요건 명시(안 제34조제2항 신설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소규모 모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(법 제63조의2제1항 전단)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의 구체화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(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규모를 1,000억원 이상,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소규모 모펀드의 난립 방지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대형화 촉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8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건
(안 제34조제3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 주체 중 법(제63조의2제1항)에서 위임한 집합투자업자의 요건 명시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집합투자업자의 요건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,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으로 구체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·운용 역량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9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의 범위, 존속기간 등 등록요건 규정 (안 제34조제4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(제63조의2제1항)에서 위임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요건 구체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 1과 금액, 유한책임조합원 수, 업무 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, 존속기간을 종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·운용 역량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10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 완화(안 제35조제4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분산 투자를 위해 종전 벤처투자조합 대비 상장 법인 투자제한* 완화 필요

*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한하여 개별 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40퍼센트 이내로 완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11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의무 비율 명시(안 제35조제6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펀드이므로, 여타 벤처투자조합*과는 상이한 기준의 주목적 투자의무 부여 필요

* ❶각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20% 이상을 창업·벤처기업에 투자

❷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이 40% 이상을 창업·벤처기업에 투자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액 대비 비율을 60퍼센트로 설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12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예외(안 제37조의2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와 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에서 위임(법 제63조의2제5항)한 종전 벤처투자조합 대비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완화 구체화 필요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5항

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기업구조개선 사모집합투자기구,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,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허용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(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기준 10퍼센트 미만,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기준 30퍼센트 이내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목적 투자에 부합하는 투자의무 부여 및 분산 투자의 자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13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·변경등록 사무 등 근거 명시(안 제39조, 제47조, 제49조, 별표 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벤처투자조합의 범위가 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더하여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확대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- 반면, 벤처투자조합의 일부 등록·변경등록 사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이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한정되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미포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(벤처투자조합의 해산)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(보고와 검사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해산사유 발생에도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서 제출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관계 공무원의 장부·서류 검사 사유에 포함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사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변경 등록 미이행, 허위 변경 등록을 과태료(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과 동일 기준) 부과 사유에 포함

* 변경등록 미이행 과태료 기준

- 1)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300만원
- 2)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: 500만원
- 3)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

* 허위 변경등록 과태료 기준 : 2,000만원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사무 등에 대한 법령수요자의 이해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

14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(안 제48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벤처투자조합의 범위가 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더하여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확대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- 반면, 일부 벤처투자조합 관련 위임·위탁 근거조문이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한정되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미포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권한 일부에 대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위임 근거 추가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 자료 관리 업무에 대한 한국벤처투자 위탁 근거 추가
- 집합투자업자 전문인력·시설 자료 관리에 대한 한국벤처투자 위탁 근거 추가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·변경등록의 접수·확인 업무에 대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위탁 근거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위임·위탁 사항 명확화에 따라 법령 수요자의 이해도 및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